

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

① 성명		② 생년월일			
③ 주소					
④ 계좌번호		⑤ 가입일자			
()년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					
⑥ 납입일자	⑦ 납입금액	비고	⑥ 납입일자	⑦ 납입금액	비고
⑧ 연간 납입금액 합계액			사 용 목 적		소득공제 신청용
⑨ 소득공제대상액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(저축취급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⑥, ⑦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(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)한 일자 및 금액을 적습니다.
- ⑧란은 납입금액을 더하여 그 금액을 적습니다.
- ⑨란은 ⑧연간 납입금액의 합계액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연간 납입금액 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100분의 40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1,200만원 + (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(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)
7천만원 초과	1,800만원

- 해당 과세기간 중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14제8항 각 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